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협력망 연구*

A Study on the Cooperative Library Service Network for the Disabled Persons in Korea

윤 희 윤(Hee-Yoon Yoon)**

목 차

- | | |
|--------------------------|-------------------------|
| 1. 서 론 | 4.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협력망의 운영방안 |
| 2.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협력의 동인과 논거 | 4.1 협력망 운영의 지향성과 목표 |
| 3.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협력망 구축모형 | 4.2 협력망 운영의 핵심메뉴와 전략 |
| 3.1 협력망 구축의 원칙 | 5. 요약 및 결론 |
| 3.2 협력망 구축모형의 기본구조 | |

초 록

국내에는 약 200만명을 상회하는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이 있다. 그들은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평생학습, 사회활동, 여가향유, 사회참여를 목적으로 도서관 지식정보에 대한 접근을 필요로 한다. 이에 주목한 본 연구는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협력망의 구축 및 운영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 협력망을 가동하기 위한 후속조치도 언급하였다.

ABSTRACT

There are more than 2 million blind and partially disabled people in Korea. They need access to books and information for all the same reasons as non-disabled persons: for lifelong learning, for social activity, for leisure, and to play a full part in society. In considering these realities, this paper has suggested the various strategies and plans to build and operate a cooperative library service network for the disabled persons. In addition, author commented on the subsequent actions for implementing the cooperative service model.

키워드: 장애인,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공공도서관, 도서관 서비스 협력망

Disabled Person, Library Services for the Disabled Person, Public Library, Cooperative Library Service Network

* 이 연구는 2008학년도 대구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 대구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yhy@daegu.ac.kr)

논문접수일자: 2008년 10월 24일 최초심사일자: 2008년 10월 28일 게재확정일자: 2008년 11월 19일

1. 서론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은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한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고 지금도 여러 정책적 및 현실적 이유로 매우 취약하다. 대표적인 소외계층인 장애인 문제는 도서관 서비스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지식기반사회와 정보해득력을 선도해야 할 도서관계는 여전히 취약계층, 특히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고 상대적 격차를 해소하는 사회적 장치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여러 저해요소 중에서 도서관계의 장애인 및 정보서비스에 대한 인식부족과 정부의 정책적 및 제도적 부실이 주된 이유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도서관이 장애인의 지속적인 평생학습력과 정보해득력을 제고시키지 못하면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없고 지역사회를 위한 지식정보센터로서의 위상을 유지할 수 없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서관을 위한 정책수립과 제도적 지원에 소홀하면 취약계층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어렵고 복지국가의 구현과 사회통합도 요원하다.

이에 주목하여 2007년 5월 22일자로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가 발족하였으며, 『도서관법』 제45조 제2항은 총 7가지 업무(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를 위한 국가 시책 수립 및 총괄, 장애인 서비스를 위한 도서관 기준 및 지침의 제정, 장애인을 위한 독서자료·학습교재·이용설명서 등의 제작·배포, 장애인을 위한 정보서비스와 특수설비의 연구 및 개발, 장애인의 정보서비스를 담당하는 전문직원 교육, 장애인의 정보서비스를 위한 국내외 도서관과의 협력, 그 밖에 장애인에 필요한 도서관서비스

에 관한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원센터는 법정 업무를 조속히 실천해야 하며, 그 시발점이 서비스 협력망 구축과 운영계획의 수립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여러 관련연구와 통계데이터를 근거로 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 및 협력사업을 분석하여 협력망 구축 및 운영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부언하면 협력망 구축모형(기본원칙과 구조 등)과 운영방안(지향성과 핵심메뉴)을 제시하고 후속과제를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2.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협력의 동인과 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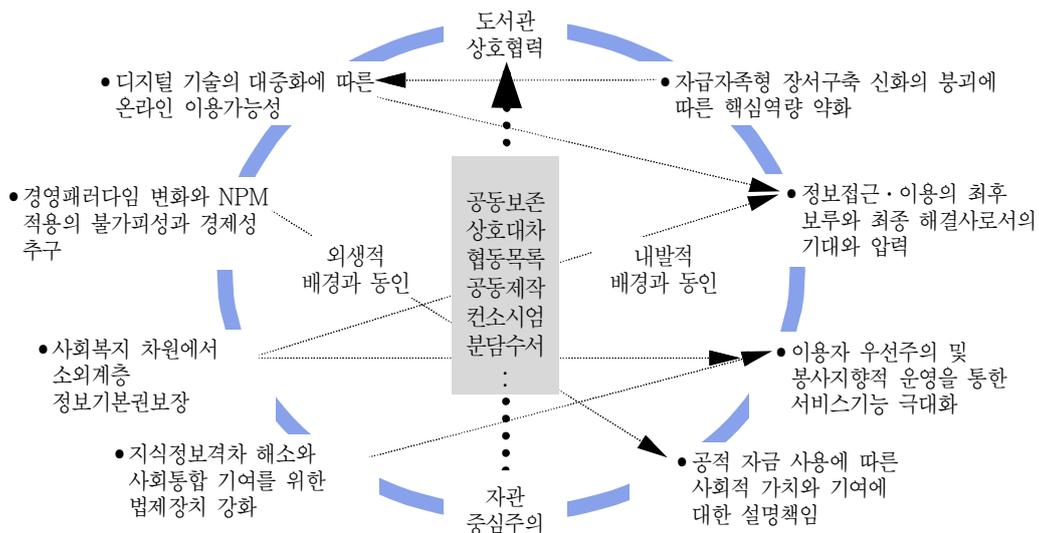
도서관 상호협력의 역사는 도서관의 태동과 함께 시작되었을 정도로 유구하다. 지난 세기 초중반의 협력메뉴는 주로 협동목록과 종합목록 작성 등에 국한되었으나 1950년대부터 분담수서, 상호대차, 공동보존 등으로 확대되었으며, 최근에는 전자잡지 및 웹DB의 컨소시엄이 협력사업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용계층의 측면에서는 사회의 지배계층에서 피지배계층으로, 소수의 엘리트 집단에서 불특정 다수의 대중으로, 성인중심에서 아동 및 노령층으로, 비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처럼 도서관 협력활동의 메뉴와 대상이 전방위로 확대되는 동인과 논거는 다각도로 추론할 수 있다. 외생적 요인은 디지털 정보기술의 대중화에 따른 통합시스템 구축과 온라인 이용성, 경영패러다임의 변화에 편승한 신공공경영 기법의 적용, 예산절감을 위한 경제성 추구하고 경영평가의 강요, 사회복지정책의 강화에 입각

한 취약(소외)계층의 정보기본권 보장과 사회 통합에의 기여, 격차해소를 위한 법제장치의 강화 등이다. 내발적 요인으로는 자급자족형 장서구축의 불가능, 지식정보에 대한 해결사로서의 기대와 압력, 사회적 존립기반과 가치에 대한 설명책임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의 스펙트럼과 상관성을 도시하면 <그림 1>과 같다.

첫째, 기술환경적 관점에서는 디지털 정보기술의 발달과 인터넷 정보유통이 보편화됨에 따라 도서관 소장자료는 물론 미소장자료와 웹정보자원도 온라인으로 접근·이용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과거 협력활동의 최대 장애였던 물리적 거리와 커뮤니케이션의 한계는 더 이상 저해요인이 아니다.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려면 장애인을 위한 DB구축과 공유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또한 디지털 점자 및 녹음도서 등을 상호대차하여 소장의 한계와 이용의 불편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둘째, 경영관리적 측면에서는 최근에 많은 영향요소가 도서관 경영환경의 복잡성을 심화시키고 있다. 아웃소싱과 위탁경영, 다운사이징 위주의 경영관리, 정보시스템의 마이그레이션과 업그레йд 전략, 법령 개정에 따른 핵심역량 강화와 소외(취약)계층의 격차해소, 사회적 위상 약화와 독점적 지위의 상실, 서비스 평가비중의 증대, 예산배정 및 지출모형의 최적화, 인력관리 및 조직구조의 상황적합성 확보, 하이브리드형 도서관 구축논리의 개발, 전략적 계획의 시급성 등이 복잡성을 대변하는 동시에 당면과제로 부상하고 있다(윤희운 2007, 18). 이에 따라 도서관도 새로운 경영기법인 신공공 경영을 수용하는 추세인데, 이 기법의 기본원칙은 업적 및 성과에 의한 통제, 시장 메커니즘의 활용, 고객기반의 경쟁원리 도입, 정책입안 및 집행기능의 분리, 계층제 완화 등이다. 따라서 분담수서, 협동목록, 공동보존 등의 협력사



<그림 1>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강화의 동인과 논거

업을 전제로 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소수집단인 장애인을 위한 개별도서관 위주의 자료수집과 정보서비스는 투입 대비 산출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협력망을 구축하여 경제성 확보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복지적 측면에서는 정보접근 및 문화향유에 대한 기본권 보장이 국제사회 사조일 뿐만 아니라 정부의 핵심정책이다. 이를 보장할 때 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고 사회통합에도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비장애인을 위한 제반활동이 장애인에게도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는데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면 모든 단위도서관이 장애인의 정보기본권을 보장하기란 쉽지 않다. 환언하면 협력망을 구축하여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실제로 2007년의 『전국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현황조사 결과 보고서』에서도공공도서관의 73.0%, 점자도서관의 86.5%가 협력망 구축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월드리서치 2007, 301). 따라서 협력망 구축은 선택적 사안이 아니라 시급한 현안이다.

넷째, 법적 측면에서 장애인서비스 협력망 구축의 근거는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도서관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우편법』 등이다. 그 중에서 주목할 법률은 2007년 4월 10일자로 제정되어 2008년 4월 11일부터 발효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8341호)이다. 이 법률의 제20조 제1항은 “개인·법인·공공기관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

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도서관 협력망 구축의 법적 근거는 『도서관법』 제45조 제2항 6호(장애인의 정보서비스를 위한 국내외 도서관과의 협력)이다. 따라서 지원센터는 다른 법정 업무와 더불어 장애인서비스 협력망을 구축하고 다양한 협력사업을 전개해야 한다.

다섯째, 내발적 요인 중 금과옥조로 삼아왔던 장서구성의 물리적 자족이 신화로 전락하여 수집과 제공에서 한계를 드러냄으로써 협력망 구축의 당위성 논거로 작용한다. 디지털 정보유통이 보편화됨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종이 소비량과 인쇄자료 출판종수는 여전히 증가추세인 반면에 자료의 평균가격은 물가상승률을 상회함으로써 도서관 예산의 상대적 구매력이 약화되어 수집력도 떨어지고 있다. 환언하면 자료 생산량과 도서관 수집량 사이의 간극이 더 커짐으로써 어떤 도서관도 자급자족은 불가능하므로 공동수집과 활용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게다가 소수집단인 장애인은 전국에 산재하므로 저마다 모든 특수자료를 확보할 여력이 없다. 그것은 여러 도서관이 분담(협동)수서와 자원공유를 위한 협력망 구축이 절실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여섯째, 도서관의 정보서비스 측면에서는 인터넷에 기반한 정보접근 및 이용채널의 다기화로 지식정보센터로서의 독점적 지위가 약화일로를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상황은 경영관리 및 장서관리의 한계를 감안하면 개별도서관의 노력으로 극복하기 어렵다. 게다가 대다수 장애인은 이동에 제약이 있어 가장 가까운 도서관이 정보접근권을 보장할 때 격차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도서관 협력망의 구축은 비장애인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정보접근성 제고와 격차해소를 위한 필수조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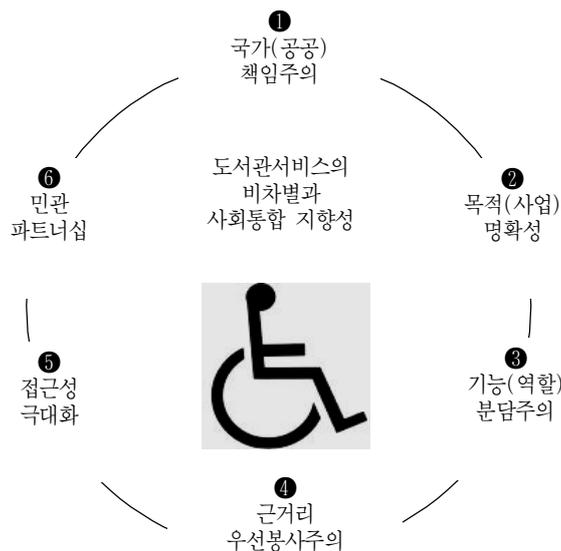
마지막으로 도서관의 사회적 책무라는 측면에서도 논거는 충분하다. 『도서관법』 제43조 제2항에서 ‘모든 국민이 신체적·지역적·경제적·사회적 여건에 관계없이 공평한 지식정보서비스를 제공받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반론의 여지가 없다. 그 중에서도 공공도서관은 지식정보의 수집과 제공, 다양한 문화활동의 전개, 평생교육 지원 등에 주력하는 한편, 취약(소외)계층의 격차해소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존재가치를 설명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개별도서관의 자료수집 및 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해야 하는데 협력망의 구축과 운영이 유일한 해법이다.

3.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협력망 구축모형

3.1 협력망 구축의 원칙

도서관이 장애인서비스를 강화할 목적으로 협력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상술한 논거를 바탕으로 목적과 목표, 기대효과, 서비스 대상의 특성 등을 고려한 원칙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현재도 도서관 협력망이 가동되고 있지만 장애인을 위한 사업이 전무하며, 그들의 행동반경이나 이용행태가 비장애인과 다르고 취약하기 때문이다. 이에 협력망 구축의 원칙과 우선순위를 제시하면 <그림 2>와 같다.

첫째, 가장 중시해야 할 원칙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주의이다. 보건복지부의 전국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1995년에는 장애인 출현율이 2.35%였으나, 2000년에는 3.09%로



<그림 2>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협력망 구축의 원칙

그리고 2005년에는 4.59%(변용찬 등 2006, 157)로 증가하였는데, 주목할 점은 전체 장애인의 89.4%(<http://www.mohw.go.kr/>)가 후천적 원인에 기인하므로 비장애인과도 일생동안 장애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서비스를 공적 책무로 각인하지 않는 한 도서관 협력망을 구축하기 어렵고 설령 구축되더라도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더욱 분명한 이유는 장애인을 위한 절대 다수의 협력사업이 비장애인의 그것과 달리 규모 및 범위의 경제성 원칙을 크게 이탈하기 때문이다. 부연하면 2006년말을 기준으로 등록 장애인수는 총인구의 4.52%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협력사업을 추진할 때 전체 장애인의 90.6%에 달하는 상위 5가지 유형의 장애인을 주력 목표집단으로 설정하더라도 투입비용 대비 산출의 경제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를 위한 협력망 구축문제를 논의할 때 일반적인 비용-편익분석이나 경제성 평가로 가부를 재단하면 구축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특히 국가정책 수립기관(지원센터)과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공공도서관)의 책임 및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둘째, 협력망을 구축할 때는 목적과 사업내용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 모든 협력망 구축에는 명분에 못지않게 실익이 중요하지만, 장애인을 위한 협력망은 실익보다 명분, 즉 목적이 더 중시되는 것이 최근 추세이다. 따라서 정보접근 및 이용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협력망 구축의 직접적 목적이지만, 더 거시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기본권 보장을 통한 비차별성과 사회통합에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한 협력사업의

스펙트럼은 매우 다양할 수밖에 없으나, 2007년 조사에서는 '각종 장비의 지원, 교육 및 연수, 통합 전자도서관 구축, 종합목록 구축, 특수자료 제작·보급, 기관대출'의 순으로 나타났다(월드리서치, 3030). 따라서 이들이 협력사업의 핵심메뉴가 되어야 한다.

셋째, 도서관 협력망은 모든 관종을 포괄하되, 철저한 기능(역할)분담이 필요하다. 어차피 지원센터는 모든 장애인에게 직접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고, 지역사회의 공공도서관도 자료·인력·예산 등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접자도서관 역시 봉사권역 및 이용집단이 한정적이다. 따라서 특정 관종에 모든 장애인서비스 책무를 부여하겠다는 발상이나 '선택과 집중'으로 포장하는 정책적 결정과 행위는 어불성설이다. 모든 관종을 아우르는 방향으로 협력망을 구축하되 법정 책무, 조직적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하여 역할을 분담하도록 조정·합의해야 한다.

넷째, 협력망 구축에는 근거리 우선봉사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장애인의 접근권은 사회 전반에 걸쳐 기회균등과 적극적 참여를 목적으로 교육, 노동, 문화생활 등을 향유할 수 있는 근본적 권리를 말하며, 각종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법적 이동권, 공공시설의 이용권, 정보통신권으로 구성된다. 이동권 대책이 필요한 장애인은 고령자를 포함하여 인구의 8%에 불과하지만, 전체 인구의 25%(고령자 중 비장애인과 장애인 각각 5.7%와 0.9%, 비고령자 중 비장애인과 장애인 각각 16.7%와 1.7%)가 이동에 제약을 받고 있으며, 그들의 96%가 후천적 장애에 의한 지체장애인이다(신연식 2002, 7-9). 따라서 장애인은 거주지

근처나 교통이 편리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협력망을 구축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다섯째, 도서관 협력망을 구축할 때는 근거리 우선봉사 원칙과 더불어 정보접근 및 이용의 편의성도 중시해야 한다. 모든 이용자는 도서관 운영비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부담하거나 지원하는 주체이므로 이용중심주의를 지향하여 서비스 기능을 극대화해야 한다. 이때의 이용중심주의는 시공간적 접근의 편의성, 이용자 친화적인 시설과 환경의 구비, 자료 확보 및 제공서비스의 신속성, 이용시스템의 최적성 등을 의미하므로 협력과 공유를 필요로 한다. 특히 도서관을 방문하기 어렵고 자료이용이 쉽지 않은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협력망 구축과 접근의 편의성 제공은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 운영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기존의 도서관 협력망을 두고 새롭게 구축 문제를 제기할 이유가 없다.

마지막으로 도서관이 장애인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협력망을 구축할 때는 민간과의 견고한 파트너십도 필요하다. 대다수 장애인은 '자신들이 겪는 최대의 장애를 스스로의 장애가 아니라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초래하는 심리적 장애'로 생각하고 있다. 이를 대표하는 사회적 문화가 소위 시혜와 동정인데, 도서관 및 정보서비스에서도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대우하려면 지원센터나 공공도서관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차원의 점자도서관 및 장애인 관련단체와 연대를 통하여 편견과 장애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협력망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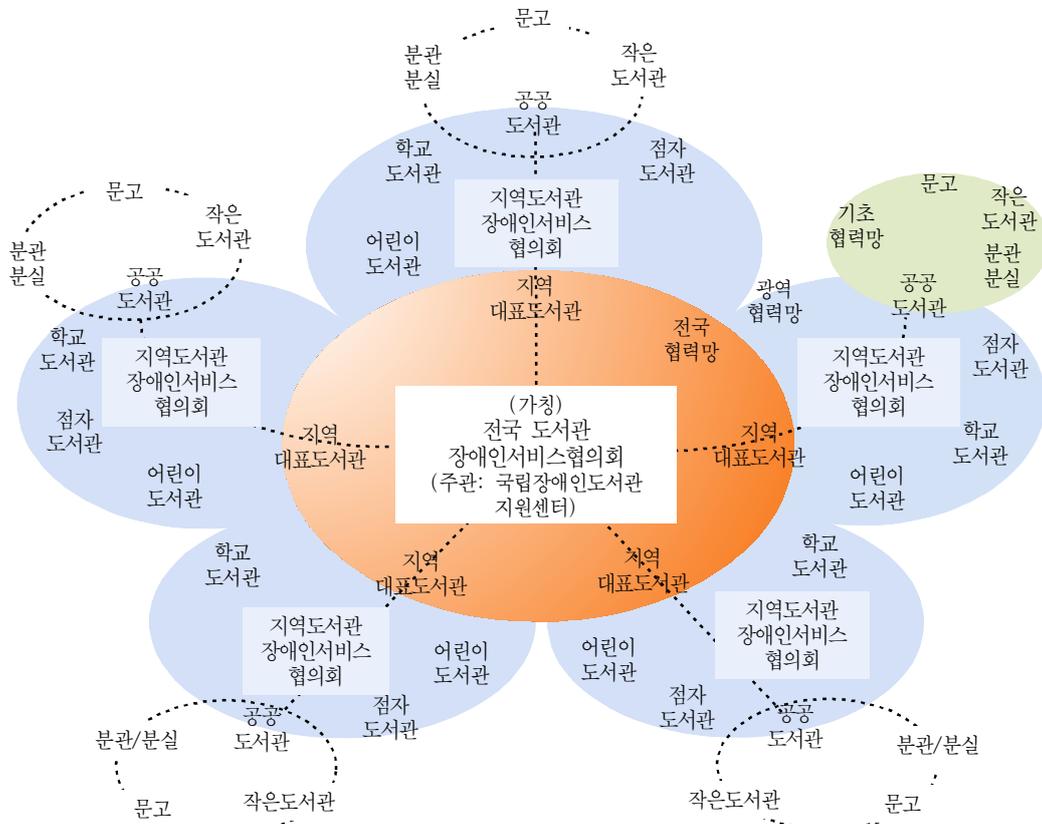
3.2 협력망 구축모형의 기본구조

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를 위한 협력망은 모든 장애인의 이동성 및 접근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술한 기본원칙을 적용해야 하며, 또한 개정 『도서관법』에 함축된 지방분권 사조의 수용, 소외계층의 정보격차 해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 등이 반영되어야 한다.

이러한 원칙과 명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력망 구축모형을 제안하면 <그림 3>과 같다. 이 모형의 특징은 지원센터 중심의 정책적 지원과 하향식 계층구조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생활공간에 위치하는 공공도서관 및 점자도서관 중심의 장애인서비스와 수평적 연계협력을 강조하는데 있다. 구축모형의 성격과 구성요소, 명분과 실리의 정합성, 현실적 및 잠재적 기대 효과 등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협력망은 모든 관중과 봉사대상을 아우르는 국가모형(National Model)의 부분집합으로 존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독자적 협력망보다 전국 협력망 내에서 특징과 신축성을 담보할 때 적실성과 실천성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협력망의 기본구조는 다계층 상향식 연계시스템(공공도서관-지역대표도서관-지원센터)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든 장애인은 거주지 주변에 위치하는 공공도서관을 가장 편리한 서비스 포인트로 인식하므로 비장애인과 동일한 공간에서 지식정보를 이용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사회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다. 그리고 지방분권 패러다임과 소외계층의 격차해소를 수용한 『도서관법』에 근거하여



〈그림 3〉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협력망(전국-광역-기초) 구축모형

설립·운영되는 지역대표도서관과 지원센터의 정책적, 제도적 지원기능이 강화될 때 공공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도 정상화될 수 있다.

셋째, 협력망의 구성단위는 모든 개별도서관과 그들의 우산역할을 하는 협의회로 양분할 수 있다. 전자는 장애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로서 공공도서관과 점자도서관이 해당하는 반면에 다른 관중은 제한된 대상층에게 서비스를 한다. 후자는 지역단위의 모든 관중을 아우르는 가칭 '지역도서관장애인서비스협의회'와 '전국도서관장애인서비스협의회'를 말한다. 지역협의회는 지역대표도서관을 중심으로 광역지

자체의 협력사업을 추진·지원하고, 전국협의회는 지원센터가 주관하며 전국 협력사업과 정책적 및 법적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선의 서비스센터인 공공 및 점자도서관을 구심체로 하는 수평적 연계서비스가 강화되고 지역협의회 및 전국협의회 수직적 협력지원이 충분해야 장애인서비스도 충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협력망을 구축할 때 전국협의회 구성 방안도 중요한 사안이다. 사단법인 공공도서관 협의회를 모체로 구축·운영하는 방안과 별도 전국협의회를 구성하는 방안이 있다. 전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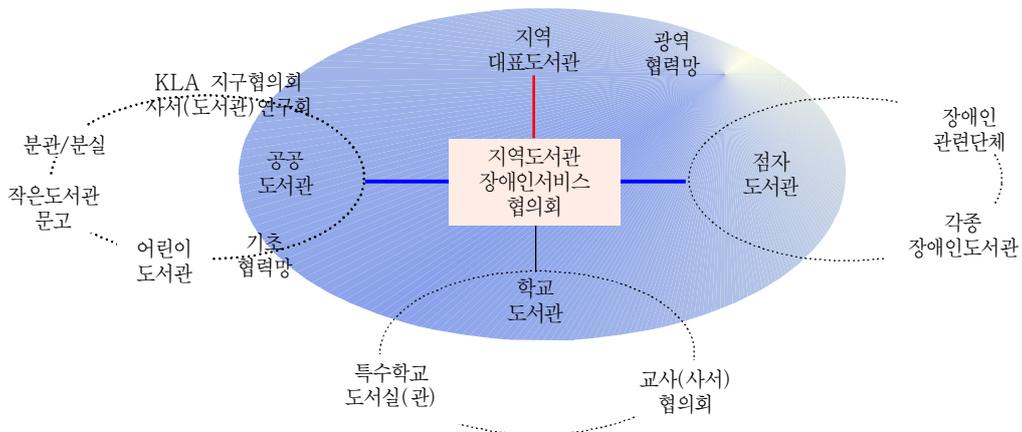
기존의 협의회를 활용할 수 있어 노력과 비용이 절감되는 반면에 다른 관종이 배제되는 한계가 있다. 후자는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구성하더라도 점자도서관 등을 포괄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조직체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법령에 근거하여 국가수준의 조직단위를 신설하였고 장애인서비스가 정보격차 해소나 사회통합의 중요한 매뉴인 점을 감안하면 미국 NLS (National Library Service)가 구축·운영하는 전국네트워크를 벤치마킹하여 16개 지역대표도서관과 한국점자도서관협의회 대표 등으로 전국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원센터가 주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협력망 구축모형은 모든 도서관이 장애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전제함에도 불구하고 공공 및 점자도서관을 직접서비스의 중심체로 상정한다. 이를 도시한 <그림 4>를 보면 공공도서관은 소규모의 다양한 서비스 포인트(어린이도서관, 작은도서관, 분관 및 분실, 문고)의 중심기관이고, 점자도서관은 각종 장애인도서관을 대표하며, 양자가 지역대표도서관이 주관

하는 지역협의회의 핵심멤버가 되어야 한다.

여섯째, 거시적 협력망을 <그림 3>처럼 구축해야 하는 명분과 당위는 지역협회가 시도별 협력사업을 주도하고 전국협회가 국가 협력사업을 계획·추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정보기본권을 보장하는데 있다. 또한 일선의 공공 및 점자도서관이 <그림 4>와 같은 미시적 협력망을 구축·운영할 때 장애인의 정보접근 및 이용서비스가 개선되고 도서관의 존재가치가 제고되며 사회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다. 요컨대 장애인서비스 협력망의 구축은 명분과 실리를 정합하는 전략적 메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협력망이 구축되면 여러 현실적 및 잠재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도서관은 장애인의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사회장기로 각인되어 존립기반이 견고하게 되고, 호혜정신에 입각한 자원공유가 활성화되면 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이 충실하게 된다. 이동성이 취약한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자료이용, 정보검색, 독서 등을 생활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참여를 통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그림 4>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지역협력망(광역-기초) 구축모형

4.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협력망의 운영방안

도서관이 장애인에게 신속·편리하게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다층구조의 협력망을 구축하고 각각의 구성주체가 책임과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 그러나 구축된 협력망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으면 구축하더라도 실효성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협력망의 주요 메뉴를 설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4.1 협력망 운영의 지향성과 목표

우선 장애인서비스 협력망이 제대로 운영되려면 분명한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며, 이들은 협력망 구축의 원칙에 배치되거나 범주를 이탈하지 않아야 한다. 전술한 협력망 구축의 원칙이 기본구조와 하드웨어에 적용되는 이론적 토대라면 다음에 적시하는 운영의 지향성과 목표는 시스템과 소프트웨어에 해당한다.

첫째, 모든 도서관은 호혜정신에 입각한 협력망 운영과 콘텐츠 공유를 공리로 삼아야 한다. 어느 분야를 불문하고 협력망이나 협의체가 명목상으로 존재하거나 실패하는 결정적 이유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구성원의 비협조에 있다. 마찬가지로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협력망의 구성단위에서도 분관이나 문고보다 공공도서관이, 사립 장애인도서관 및 학교도서관보다 공립 공공도서관이, 공공도서관보다 지역대표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이 비교우위의 입장에 있으므로 호혜의식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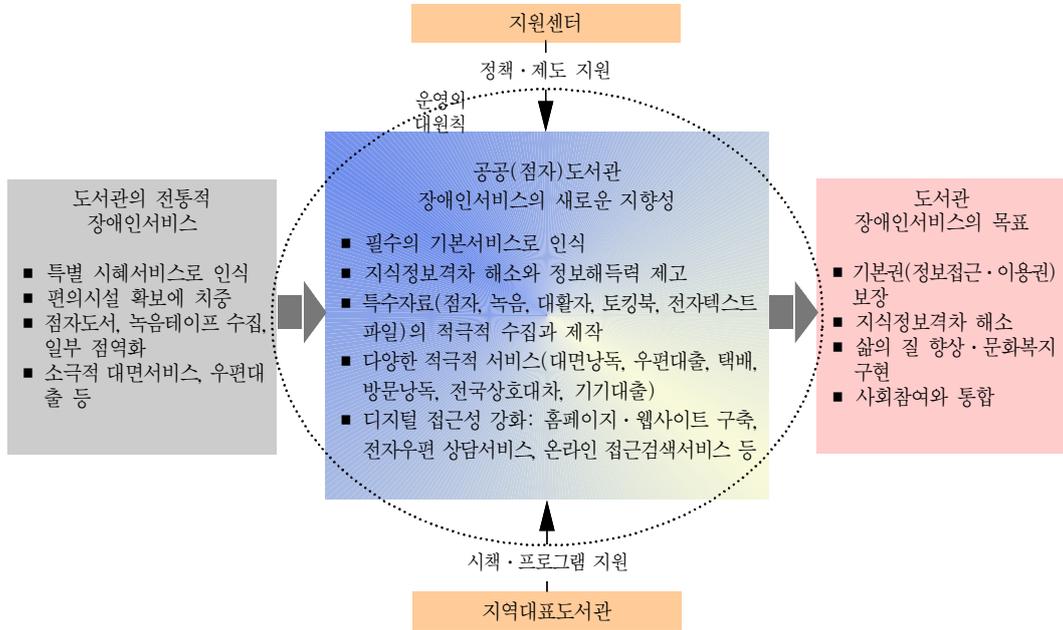
둘째, 협력망 운영에서는 주체와 객체의 구별성이 명확해야 한다. 기초협력망은 자치단체

의 공공도서관이, 광역협력망은 지역대표도서관이, 전국 협력망은 지원센터가 운영의 주체이며, 나머지 구성단위는 객체에 해당한다. 주객이 전도되거나 애매할 경우에 협력망 운영의 적실성과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셋째, 장애인서비스 협력망은 층위별로 기능과 활동의 수준이 차별화되어야 한다. 기초협력망은 장애인에게 직접서비스를 제공하고, 광역협력망은 서비스를 담당하면서 기초협력망을 지원하며, 전국 협력망은 국가의 포괄적 정책과 광역시도의 시책을 수립·지원하는데 주력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넷째, 도서관 협력망을 운영할 때는 장애인의 유형에 따라 시설, 자료, 서비스 등의 규모와 제공범위를 설정해야 한다. 가령 시각장애인을 위한 오디오 CD와 플레이어의 제작 및 배포는 지원센터나 지역대표도서관의 몫으로만 볼 수 없다. 문화관광부를 비롯한 보건복지부, 정보통신부, 노동부 등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재원을 확보하되, 민간의 소프트웨어 및 정보기기 제작업체와 협의·추진해야 할 범국가적 사안이다.

다음으로 협력망을 운영할 때는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기초, 광역, 전국을 불문하고 협력망의 모든 층위가 사회적 책무를 수행하려면 비장애인의 서비스에 추가로 제공하는 '시혜성 서비스'로 간주할 것이 아니라 '기본서비스'로 간주해야 한다. 그리고 장애인서비스의 궁극적 목표는 기본권(정보접근·이용권) 보장, 정보격차의 해소, 삶의 질 향상과 문화복지 증진, 사회참여와 통합에 있다. 이를 도시하면 <그림 5>와 같다.



〈그림 5〉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협력망 운영의 지향성과 목표

4.2 협력망 운영의 핵심메뉴와 전략

도서관이 다층구조의 협력망을 통하여 장애인의 접근성과 만족도를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을 어떻게 협력·공조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그 중에는 상호협력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사소한 것에서 국가차원의 제도적 기반과 시스템 구축을 전제로 하는 복잡하고 난해한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2007년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협력망을 구축할 경우에 공공 및 점자도서관이 희망하는 협력 내용의 순위는 각종 장비의 지원, 교육 및 연수, 통합형 전자도서관 구축, 종합목록 구축, 점자도서 및 녹음자료 제작·보급, 기관대출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월드리서치, 303). 그러나 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는 각종 제도적 기반을 전제로 자료를 수집·제작하고 서지 및 원문

DB를 구축·제공하는 행위이다. 자료제작이나 종합목록 및 전자도서관 구축도 중요하지만 그 기반이 되는 지침과 기준, 표준 직무모형의 개발의 적용, 서비스 담당인력의 전문성 강화 등이 더욱 중요하다. 따라서 다음에 적시한 핵심메뉴를 중심으로 협력망을 정착시키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4.2.1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지침과 기준의 개발

도서관이 자체적으로 또는 협력망을 통하여 장애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론적 토대인 동시에 실무적 근거인 지침과 기준을 개발해야 한다. 1990년대 중반부터 IFLA,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은 <표 1>에 간주된 것처럼 일반적 지침 뿐만 아니라 장애유형별 세칙도 제정하여 반영하고 있다.

〈표 1〉 주요 선진국의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지침(기준) 제정 사례

제정기관	지침(기준)명	적용분야				
		전반	신체	시각	청각	정신
IFLA	1999	Guidelines for Library Service to Braille Users.			✓	
	2000	Guidelines for Library Services to Deaf People				✓
	2001	Guidelines for Library Services to Persons with Dyslexia	✓			
	2007	Guidelines for Library Services to Persons with Dementia				✓
미국	ALA(1995)	Guidelines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for the American Deaf Community.				✓
	ALA(1996)	Standards for Library Services for the Blind and Visually Handicapped.			✓	
	ALA(1999)	Guidelines for Library Services for People with Mental Retardation.				✓
	ALA(2006)	Guidelines for Library Services for People with Mental Illnesses.				✓
	LC(2006)	Revised Standards and Guidelines of Service for the Library of Congress Network of Libraries for the Blind and Physically Handicapped.		✓	✓	
캐나다	CLA(1997)	Canadian Guidelines on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			
호주	ALIA(1998)	Guidelines on Library Standard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			

그러나 국내의 경우는 2003년판 『한국도서관 기준』의 ‘특수도서관’ 부문에서 각종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장애유형별로 구체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협력망 구축을 계기로 모든 도서관이 준용할 수 있는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지침’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책임은 『도서관법』 제45조 2호(장애인서비스를 위한 도서관 기준 및 지침의 제정)의 규정에 따라 지원센터에 있다. 또한 협력망 주무기관의 입장에서도 서비스 지침의 제정에 대한 책무를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지원센터는 협력망 구성멤버와 공동 작업 방식으로 초안을 준비하여 전문가 집단에 자문을 구하거나 학계에 의뢰하여 조속히 서비스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그 내용에는 서론(배경, 목적, 범위 등), 장애인의 정의와 유형, 장애인서비스 일반원칙, 장애인서비스의 구성요소와 기준(장서개발, 이용서비스, 정보기술과 디지털 접근성, 전문인력, 상호협력, 서비스 평가 등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4.2.2 장애인용 대체자료의 개발과 제작

도서관 협력망의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메뉴는 대체자료의 개발이다. 이를 위해서는 비장애인 위주의 장서개발정책을 재검토하여 장애인용 자료수집과 매체변환을 강화해야 한다. 개발대상에는 인쇄자료, 시청각 자료, 점자도서, 카세트 테이프와 디지털 녹음자료, 전자자료, 대활자 및 촉각자료, 음성파일, 디지털 점자자료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를 중심으로 지원센터와 지역대표도서관은 구입, 제작, 기증, 교환, 라이선스 협약, 링크, 다운로드 등의 방식으로 개발하여 일선의 도서관을 지원해야 한다.

다만 대상자료 중에서 도서관이 직접 수집·제작하여 제공할 수 있는 비율은 극히 낮다. 단적인 예로 영국에서 연간 생산되는 도서 가운데 장애인용 출시율은 약 4.4%에 불과하다(Lockyer 2005, 33). 이를 감안하여 국내의 장애인용 출시율은 더 낮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도서관은 장애인용 특수자료를 제작해야 하는데 다음의

계약요소가 걸림돌로 작용한다.

- ① 도서관이 장애인의 접근 및 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작해야 할 자료의 포맷은 <표 2>처럼 장애유형에 따라 매우 상이하다(Irvall & Nielsen 2005, 14).
- ② 게다가 대체자료를 개발하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예시한 <표 3>를 보면 인쇄자료 4권의 평균가격은 9.49파운드이지만 대체포맷으로 제작할 경우, 오디오 CD는 평균 61.55파운드, 오디오 테이프는 평균 35.74파운드가 소요된다(Royal National Institute of the Blind 2003, 12).
- ③ 대체포맷을 제작하더라도 통상 일반도서관의 6배에 달하는 수장공간이 더 필요하므로 서비스센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공도서관과 분관(분실), 작은도서관, 문고

등은 대체본을 수장할 여력이 거의 없다.

따라서 광역협력망을 주관해야 할 지원센터는 지역대표도서관과 함께 점자도서, 디지털 녹음도서, 대활자본 등의 대체포맷을 확충하는데 주력하되, 제작시설이 미비한 현실을 감안하면 직접 제작하기보다는 기존의 민간업체 및 점자도서관을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그림 6>처럼 직접 제작하는 방식과 아웃소싱 방안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2.3 대체자료의 정리 및 DB 구축

도서관이 특수자료를 장애인서비스 협력망 운영의 핵심메뉴로 삼을 경우에는 수집한 자료를 정리하고 DB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특히 지원센터와 지역대표도서관의 역할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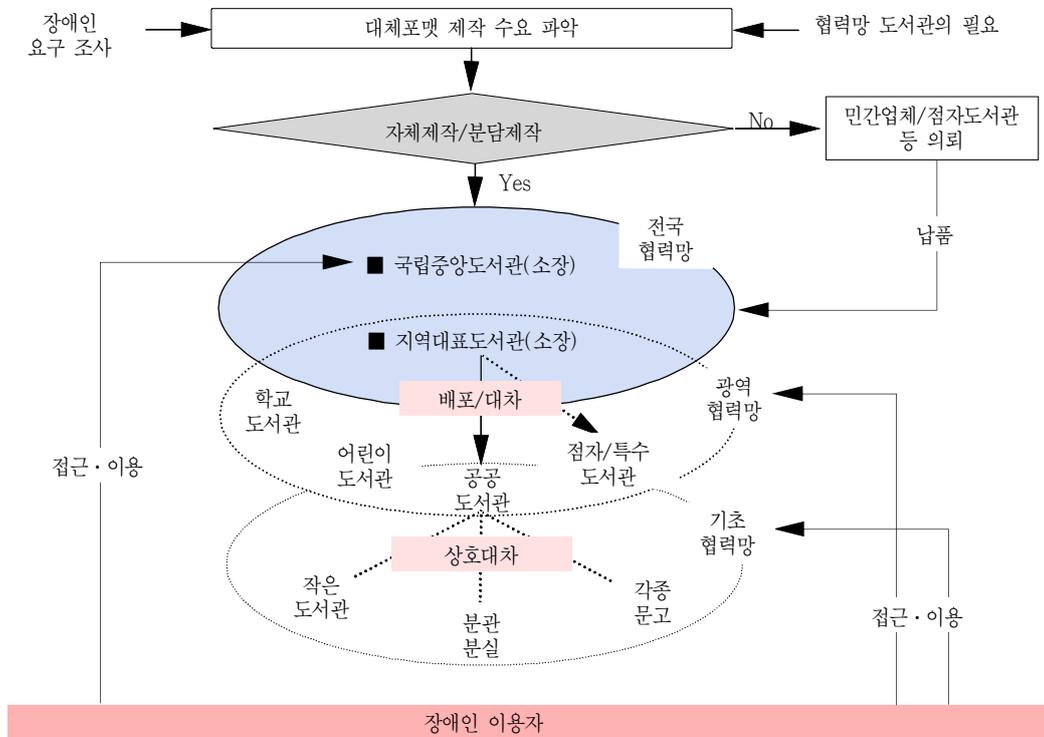
<표 2> 장애유형별 도서관 자료이용에 필요한 매체의 형식

유형	매체 형식	매체 형식						
		대활자	테이프/DAISY CD/DVD	점자	웹사이트	자막 또는 수화 포함된 비디오	텍스트 전화	읽기 쉬운 도서
시각장애		■	■	■	■			
언어·청각장애					■	■	■	■
독자장애		■	■		■			■
신체장애			■		■			
인식장애			■		■			■

<표 3>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포맷 개발비용의 비교

저자	서명	비용(₩)		
		인쇄본	오디오 CD	오디오 테이프
J.K. Rowling	Harry Potter	16.99	75.00	65.00
Minette Walters	Fox Evil	6.99	64.57	53.99
Jonathan Kellerman	The Murder Book	6.99	47.95	-
Ruth Rendall	Babes in the Wood	6.99	58.69	23.99
평균		9.49	61.55	35.74

* hard ba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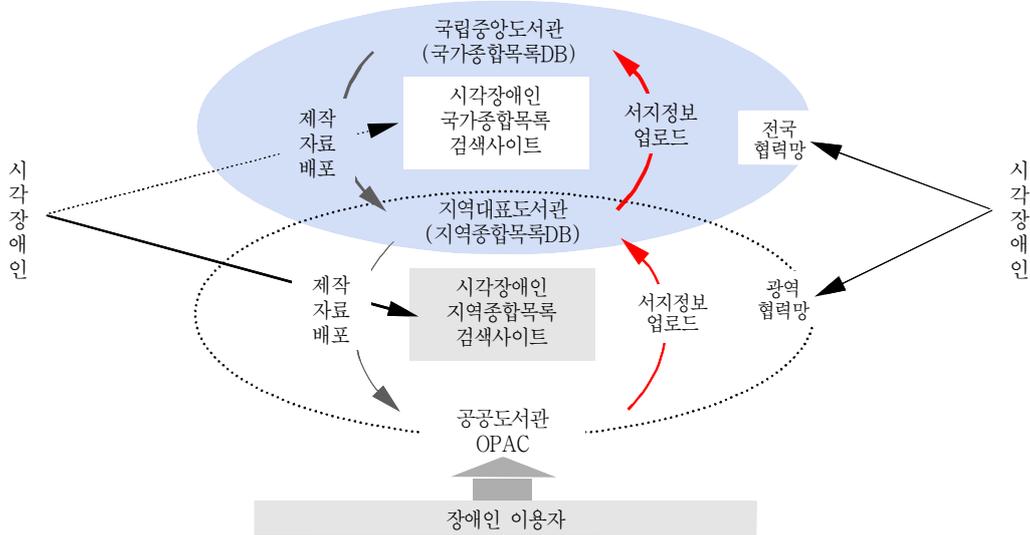
〈그림 6〉 장애인서비스 협력망을 통한 대체포맷 제작과정 및 배포서비스

중요하다. 이미 국립중앙도서관은 시각장애인의 정보검색을 위한 별도의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어 대체포맷을 제작·수집하더라도 DB 구축에 큰 문제가 없다. 다만 개별도서관이 제작 또는 수집한 특수자료를 공유하려면 국립중앙도서관의 장애인용 DB에 집합되어야 한다. 따라서 협력망에 참여하는 모든 도서관은 다음에 적시한 방향으로 협력하고 각각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 ① 도서관의 시각장애인용 DB는 국립중앙도서관이 주도하여 중앙집중식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장애인용 대체포맷의 제작과 지원을 주도하고 전국 협력망을 주관해야 할 책임이 지원센터

에 있기 때문이다.

- ② 대체자료의 서지통정은 전국 및 광역협력망의 책임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에 역할을 분담하되, 서지정보 DB구축의 흐름도는 〈그림 7〉처럼 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부연하면 광역협력망의 단위도서관은 자체 제작하거나 수집한 자료에 한하여 서지레코드를 작성하고 주관기관인 지역대표도서관으로 업로드하며, 이들을 수합하는 지역대표도서관 역시 자체 수집하거나 제작한 자료를 정리하여 DB를 구축하고 업로드하면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종합DB에 포함시켜 관리한다.



〈그림 7〉 장애인서비스 협력망을 통한 시각장애인 종합목록DB 구축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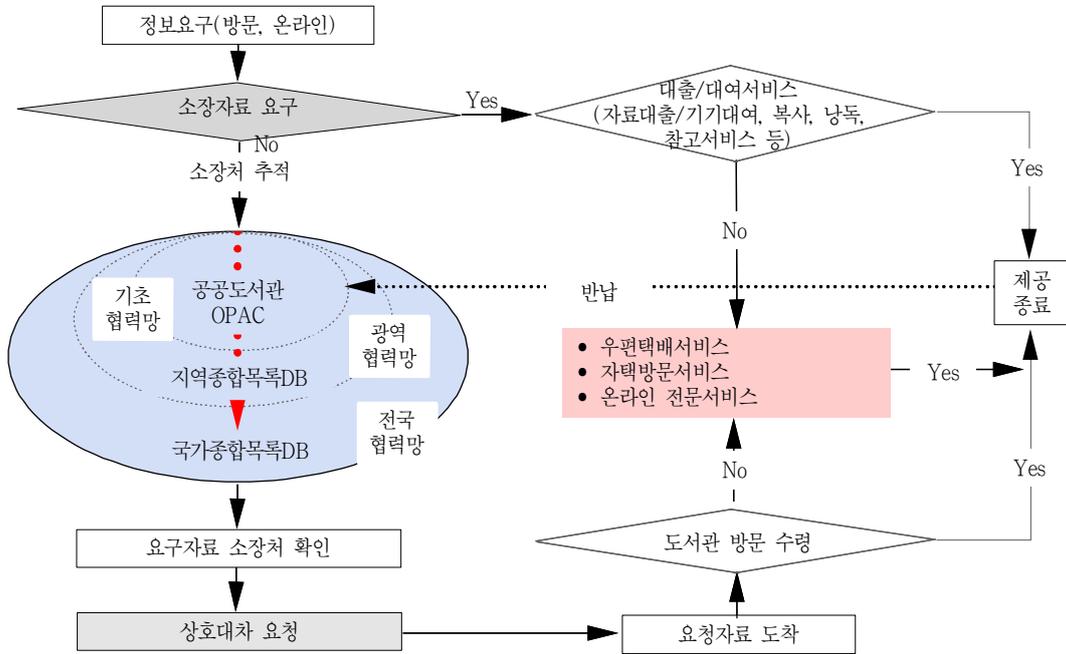
③ 모든 장애인은 지역종합목록DB와 국가 종합목록DB에 접근하여 검색·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장애인의 거주지와 그들의 서지정보 검색 후의 상호대차 요청의 가능성을 감안하면 광역협력망의 구성멤버인 동시에 기초협력망을 주관하는 공공도서관의 OPAC이 최초 접근점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4.2.4 장애인을 위한 직접서비스의 제공과 지원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협력망의 궁극적 목적인 동시에 성과를 좌우하는 핵심메뉴는 직접서비스이다. 장애인이 도서관을 방문하여 자료를 이용 또는 대출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때는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요청한 자료를 소장하지 않은 경우와 방문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는 상호대차서비스, 우편택배서비스, 방문서비스, 온라인서비스 등이 필요하며, 협력

망이 유기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다층구조의 협력망을 통하여 장애인의 접근성과 만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그림 8〉과 같은 운영모형이 바람직하다.

- ① 장애인의 자료검색은 협력망 내에서 원스톱 서비스로 해결되어야 한다. 가령 장애인이 거주지의 공공도서관 OPAC을 검색할 때 지역종합목록DB 및 국가종합목록DB가 연동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② 장애인이 서지정보를 검색하여 서비스를 요청하면 해당도서관은 다층구조의 협력망에서 소장처를 확인하여 해결하되, 아날로그형 대체자료일 때는 상호대차를 의뢰하고 방문 수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편대출, 택배서비스, 자택방문, 온라인 파일송부 등의 방식으로 제공해야 한다.
- ③ 대출한 자료의 반납은 기초 및 광역협력망에 소속된 모든 도서관, 즉 어느 서비스 포인트를 통해서도 가능해야 한다.



〈그림 8〉 장애인서비스 협력망을 통한 각종 서비스의 흐름도

- ④ 장애인의 도서관 접근 및 자료이용에는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근거리 우선원칙을 적용하되 다단계 협력망을 통한 전국상호대차시스템을 운영해야 불편을 해소할 수 있고 지연도 막을 수 있다.
- ⑤ 그 외에도 협력망을 통한 이용카드의 대리 발급, 자원봉사자의 책 읽어주기, 팩스나 전자우편을 통한 참고봉사, 시각장애인을 위한 홈페이지 및 OPAC 인터페이스의 강화 등이 필요하다. 특히 거택보호자를 위한 택배서비스, 가정방문 대면낭독서비스 등의 확장봉사(outreach services)는 전략적 메뉴로 삼아야 한다.

4.2.5 장애인 정보해득력프로그램의 강화와 다양화

모든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인격적 존엄성을 인정받고 적절한 방식과 수준으로 평생학습기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평생학습과 정보해득력은 정보사회의 삶을 견인하는 양대 지주이므로 공공도서관이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평생학습프로그램의 핵심메뉴도 정보해득력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윤희운 2006, 59). 따라서 각종 평생학습프로그램은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 뿐만 아니라, 사회참여를 지원·유도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가장 유효한 메뉴로 간주할 수 있다. 이를 위한 바람직한 운영방향과 프로그램 모형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 ① 도서관 협력망을 통하여 제공할 평생학습은 비장애인과 공통된 가치 및 욕구를 충족시키는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예컨

- 대, 컴퓨터 활용 및 인터넷 이해와 같은 지식정보 격차해소를 위한 정보해득력, 노동기회 확대와 노동시장에의 통합을 위한 인적자원 개발, 시민의식 고취와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시민교육 등이 필요하다.
- ② 광역 및 전국 협력망은 장애인을 위한 인터넷 활용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워크숍을 개최할 필요가 있다. 그 내용은 기본적인 웹서핑에서 고급 웹탐색과 전자우편에 이르기까지 다양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③ 심신장애의 경감과 보완 또는 극복에 필요한 평생학습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적절한 교육과 여가활동을 통하여 정서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장애이동프로그램, 지속적인 성인생활로 전환하는데 유용한 장애청소년프로그램, 고용·주거·재정·여가 등의 활동을 지원하는 장애 성인프로그램 등이 포함될 수 있다.
 - ④ 장애인의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위험을 차단할 프로그램과 자기결정 및 자기주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성공적 학습, 작업경험, 사회적응을 위한 통합된 환경에 위치하도록 주체적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 법률상식을 높이는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 ⑤ 장애유형별로 독특한 평생학습프로그램, 즉 시각장애인을 위한 라디오 독서서비스나 음악감상서비스,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처리 영화회, 정신장애 및 독서장애인을 위한 독서치료 등의 프로그램을 개설해야 한다.
 - ⑥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쉽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에게 특수지식과 능력을 교육시키는 장애인 도우미 프로그램, 수화 및 점자제작, 책 읽어주기, 독서요법 등도 프로그램화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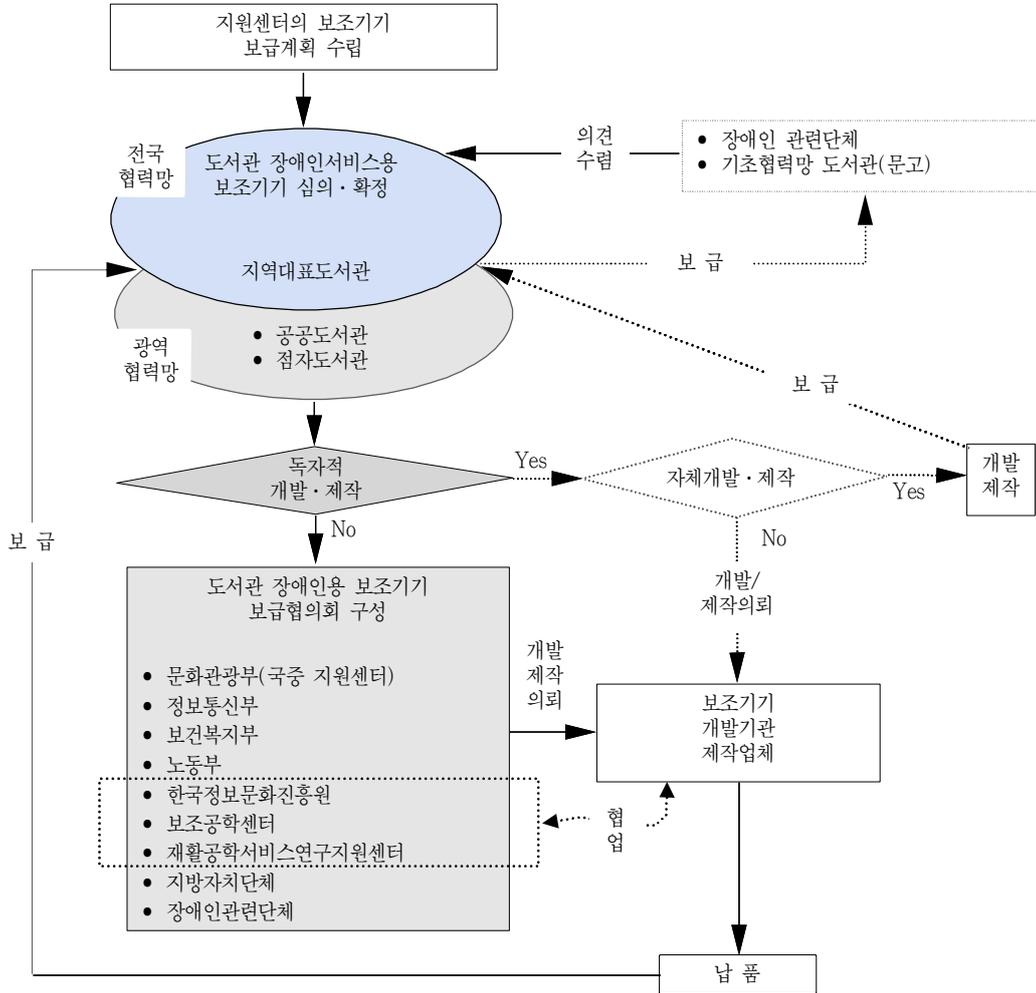
- ⑦ 후천적 장애인을 위한 재활프로그램과 그들을 조력할 가족대상의 평생학습프로그램을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례로는 정보검색서비스, 원격대출서비스, 온라인 참고서비스, 자료입수방법, 디지털 녹음도서(DAISY)의 이해 등을 들 수 있다.

4.2.6 장애인서비스용 보조기기의 개발과 보급

도서관이 대체포맷을 제작하거나 수집하더라도 장애유형에 따라 특수자료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부대기기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므로 보조기기의 개발 및 보급도 지원센터 및 전국 협력망의 전략적 메뉴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국내에서 장애인용 정보접근 보조기기의 개발과 및 지원사업은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주도하고 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마이크로피시 확대기, 광문자 인식기, 대활자용 OPAC, 청각장애인을 위한 프린터 부착형 타자기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림 9>처럼 관련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 외에 지원센터는 광역협력망의 핵심멤버인 공공 및 점자도서관이 대체포맷과 보조기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4.2.7 표준 직무모형 개발과 전담인력의 전문성 강화

도서관 장애인서비스를 강화하려면 서비스 포인트의 확충, 대체포맷의 개발·제작·배포,



〈그림 9〉 장애인서비스 협력망을 통한 보조기기 개발·보급 전략

협의 및 협업을 통한 보조기기의 생산·보급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들을 서비스로 연계시키는 인력이 부실하면 무용지물이다. 따라서 표준직무 개발과 전문성 강화도 협력망 운영의 핵심 메뉴로 상정해야 한다.

우선, 전국 협력망의 중심체인 지원센터는 공공 및 점자도서관의 모든 업무를 분석하여 표준직무를 개발하고 협력망 회의에서 확정할 필요가 있다. 주요 선진국은 오래 전에 도서관

직무를 분석하였으며, 최근에도 일본도서관협회가 공공도서관 직무를 분석한 바 있다. 그 가운데 장애인서비스 직무분석 결과를 발췌하면 〈표 5〉와 같다(<http://www.soc.nii.ac.jp/jla/kenshu/kenshuwg/siry01.pdf>).

둘째, 지원센터는 사서직의 장애인서비스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2006년은 물론 2007년도 국립중앙도서관의 사서연수프로그램을 보면

〈표 4〉 공공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 업무분석(2000)

구 분	구체적인 업무
F. 장애인서비스	1. 시각장애자 자료선정 및 작성의뢰
	2. 시각장애자 자료제공
	3. 시각장애자 자료안내
	4. 대면상담
	5. 청각장애자서비스
	6. 기타 도서관이용에 장애를 가진 자에 대한 서비스
	7. 가정배본서비스
G. 병원·형무소 등에서의 서비스	1. 자료의 선정
	2. 대출
H. 다문화서비스	1. 일본어 이외의 자료의 수집과 제공
	2. 일본어 습득을 위한 자료의 수집과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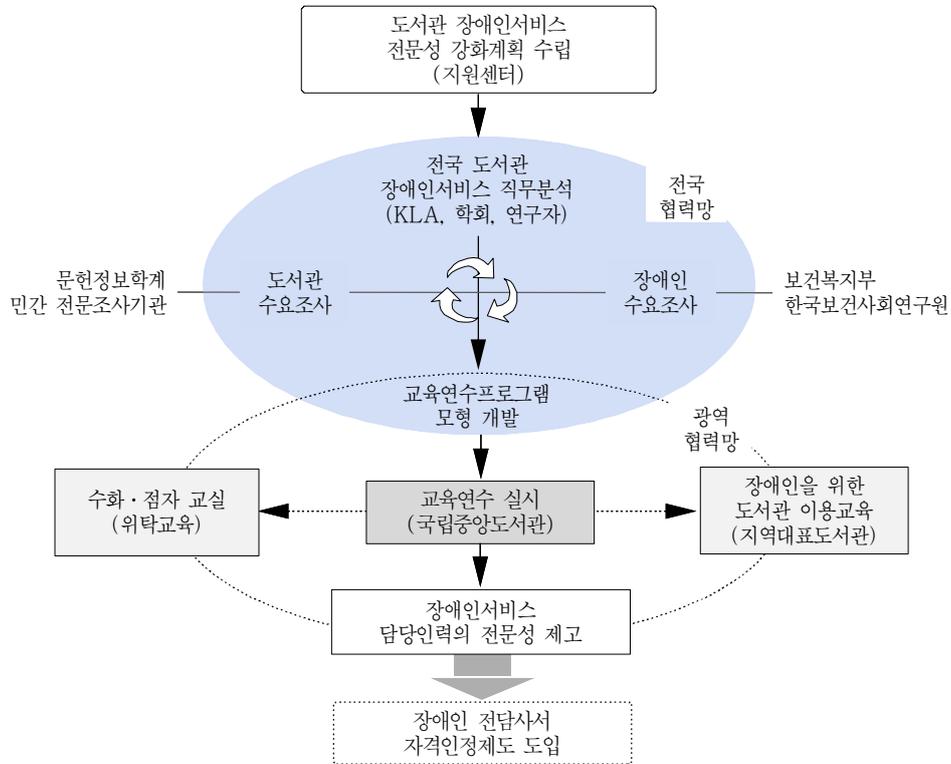
총 31개 교육과정 중에서 장애인서비스 담당 인력을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은 없다. 따라서 직무분석과 장애인 대상의 수요조사를 전제로 지원센터는 〈그림 10〉과 같은 개발모형에 입각하여 교육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이 모형에서 중시하는 전략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도서관이 희망하는 교육수요는 전국 및 광역협력망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장애인의 희망사항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5년마다 조사하는 ‘장애인 실태조사’에 포함시키도록 협의하여 근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② 기존의 사서직 교육연수프로그램에 가칭 ‘장애인서비스과정’을 추가해야 한다. 이 교육과정은 연간 2회에 걸쳐 각각 1주일씩 운영하되, 수강대상을 공공도서관과 기타 관중으로 양분하고 주요 내용은 ‘지식기반사회와 장애인, 장애인 정책과 법제의 분석, 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 장애

인용 자료제작과 원격서비스 방법, 장애인도서관 방문과 견학’ 등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그 외에도 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를 위한 자원봉사자 교육프로그램, 장애인의 도서관 이용촉진 프로그램, 현직자 중심의 세미나 등도 전국 협력망을 통하여 실천해야 할 주요 메뉴에 속한다.

이상의 협력사업은 지원센터의 책임감과 실천의지, 전국 협력망의 구성 및 운영방식에 따라 성패와 성과가 좌우된다. 지원센터가 다층구조형 협력망과 유기적 연계성을 아무리 강조하여도 리더십과 정책기능이 취약하면 국가 및 자치단체를 상대로 장애인서비스의 중요성을 설득하고 재정지원을 독려할 수 없다. 또한 대체포맷의 개발과 지원시스템이 부실하면 지역대표도서관 및 서비스센터를 선도할 수 없고 협력망 운영체계의 적실성도 담보할 수 없다.



〈그림 10〉 장애인서비스 협력망을 통한 교육연수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5. 요약 및 결론

일반적으로 장애인은 이동성과 접근성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지식정보를 이용할 때 겪는 고통이 비장애인보다 훨씬 심하다. 그러므로 거주지 내지 생활동선에 위치하는 도서관이 장애인의 자료이용과 정보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그러나 개별도서관은 장애인의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실제로 서비스 능력도 약하다. 이에 주목하여 제안한 전국적 협력망 구축모형 및 운영방안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 협력망을 구축

할 때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주의, 목적과 사업내용의 명확화, 철저한 기능분담, 근거리 우선봉사, 이용중심주의, 민간과의 견고한 파트너십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둘째, 도서관 협력망 구축모형의 기본구조는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 중심의 정책적 지원과 하향식 계층구조보다 공공도서관 및 점자도서관 중심의 장애인서비스와 수평적 연계협력력을 강조하는 다계층 상향식 연계시스템(공공도서관-지역대표도서관-국립지원센터)이 바람직하다. 이 모형은 모든 관중과 봉사대상을 포괄하는 국가모형의 부분집합으로 존재해야 하며, 지역사회의 모든 관중으로 구성하는 가칭

‘지역도서관장애인서비스협의회’와 지역대표도서관 중심의 ‘전국도서관장애인서비스협의회’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전자의 핵심멤버는 공공 및 점자도서관이며 지역대표도서관이 주관하여 광역시도의 협력사업을 추진·지원하고, 후자는 지원센터가 주관하여 전국 협력사업과 정책적 지원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셋째, 장애인서비스 협력망을 운영할 때는 콘텐츠 공유, 주체와 객체의 구별, 층위별 활동 수준의 차별화, 시설·자료·서비스 등에 대한 장애유형별 규모와 범위의 설정 등을 정언적 명제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다단계 협력망의 모든 층위는 장애인서비스를 기본서비스로 간주하되 정보기본권 보장, 지식정보격차의 해소, 삶의 질 향상과 문화복지 증진, 사회참여와 통합을 지향해야 한다.

넷째, 모든 도서관이 장애인의 접근성과 만족도를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이론적 토대인 동

시에 실무적 준거인 장애인서비스 지침과 기준의 제정, 대체자료의 개발과 DB구축, 서지정보 검색 및 원문입수의 원스톱 서비스, 사회적응 및 격차해소를 위한 평생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제공, 보조기기의 개발 및 보급, 표준직무의 개발과 전문성 강화 등을 다층구조형 협력망 운영의 핵심메뉴로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요컨대 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를 위한 협력망 구축과 운영은 발상의 전환을 필요로 한다. 비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환경을 우선 조성한 다음에 추진해야 할 후순위 메뉴가 아니며, 어떤 상황논리도 저해요소로 작용할 수 없다. 이러한 인식과 책임을 바탕으로 개체수의 지속적 확충, 시각장애인용 웹사이트의 개설, 전국상호대차시스템의 개발과 연동, 장애인 이용환경과 서비스에 대한 정밀조사, 법적 기반(자치조례, 도서관규정 등)의 정비와 같은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변용찬 등. 2006. 『200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서울: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北克一 등저. 2003. 『デジタル環境下における視覚障害者等図書館サービスの海外動向』. 東京: 國立國會図書館.

신연식. 2002. 『교통약자의 보행교통환경에 대한 평가와 정비방안』. 서울: 교통개발연구원.

월드리서치. 2007. 『도서관 장애인 서비스현황 조사결과 보고서』.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윤희운. 2007. 도서관 경영패러다임과 기법의 변화.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8(3): 5-23.

윤희운. 2006. 도서관 평생학습활동의 성찰과 방향.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7(4): 45-66.

윤희운. 2007. 주요 국가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 정책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8(4): 215-240.

정인순 등. 2005.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 및 개

- 선방안 연구』. 서울: 국립특수교육원.
- 한국도서관협회. 2003. 『2003년판 한국도서관기준』. 서울: 동협회.
- Alter, Rachel, et al. 2007. *Guidelines for Library Services for People with Mental Illnesses*. Chicago: ASCLA.
- Carey, Kevin. 2007. "The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of the Digital Age: A Blind User's Perspective." *Library Trends*, 55(4): 767-784.
- Cookson, J. and L. Rasmussen. 2001. "National Library Service for the Blind and Physically Handicapped." *Library Hi Tech*, 19(1): 15-18.
- Cylke, F. K., M. M. Moodie, and R. E. Fistick. 2007. "Serving the Blind and Physically Handicapped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Library Trends*, 55(4): 796-808.
- IFLA. 2000. *Guidelines for Library Services to Deaf People*. 2nd edition. Hague: IFLA.
- IFLA. 1999. *Guidelines for Library Service to Braille Users*. Hague: IFLA.
- Irvall, Birgitta & Gyda Skat Nielsen. 2005. *Access to Librar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Checklist*. Hague, IFLA.
- Lockyer, S., Claire Creaser and J.E. Davies. 2005. *Availability of Accessible Publications*. Loughborough: LISU.
- Owen, David. 2007. "Sharing a Vision to Improve Library Services for Visually Impaired People in the United Kingdom." *Library Trends*, 55(4): 809-829.
- Rubin, Rhea Joyce. 2001. *Planning for Library Services to People with Disabilities*. Chicago: ALA/ASCLA.
- The Royal National Institute of the Blind. 2003. *Overdue: An RNIB Report*. London: RNIB.
- Tucker, Richard L. 2007. "Library and Resource Center Facilities for Visually and Print Impaired People in Developing Countries." *Library Trends*, 55(4): 847-863.